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25일,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28.) 상정, 축조심사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30.)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문진석)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채 위험작업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체들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건설공사 범위 확대

현행법 제34조제9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의무 이용이 공공 건설공사로 한정되는데,

개정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이용 대상으로 공공 건설공사 외에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를 추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공공 건설공사와 같이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보임.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

현행법 제34조제2항 및 현행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하도급공사 1건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라 함)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 제68조의3제1항 및 현행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함)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34조제3항 및 제68조의3제3항에서 각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

교통부고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산정 방식이 국토교통부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달라,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실제 지출하는 비용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됨.

이는 하도급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자 및 지역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안 제34조제9항에서 도급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민간 건설공사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안 제34조제10항 및 안 제68조의3제7항은 안 제34조제9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 지원 사례와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대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청구·수령·지급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에 드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건설공사에 있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 및 체불 방지를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도개선 필요성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의무화보다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내용을 반영함.